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 등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부여 등〉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38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가.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 ...	2
나.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7.
3. 회부연월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등).

Ⅲ. 검토의견

가.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대상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포함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재난취약시설에 포함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의무 가입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5).

[illegible]

현행	개정안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3호에 따른 <u>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u>
3. (생략) ③ ~ ⑦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숙박시설, 주유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총 20종의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로 하여금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¹⁾.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²⁾]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1·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숙박업을 하는 시설</u>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u>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u>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u>과학관</u>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u>물류창고업의 등록대상 물류창고</u>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는 <u>박물관·미술관</u>

1) 현재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4조의5(별표3)

연번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매장)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12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장외발매소)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농어촌민박)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증가하고,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됨³⁾에 따라 국내 전기차와 충전시설은 2019년에 각각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91,557대, 44,792기에서 2023년 11월 기준 각각 553,155대, 286,384기로 5년간 약 600%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전기차 및 충전시설 현황(누적)]

(단위: 대, 기)

	2019	2020	2021	2022	2023. 11.
전기자동차	91,557	138,291	238,718	403,204	553,15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4,792	64,188	106,701	205,205	286,384

자료: 환경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화재 또한 2019년 7건에서 2023년 8월 기준 5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장소별·상황별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비율(%)	‘19년	‘20년	‘21년	‘22년	‘23.8.
화재건수		139	-	7	11	24	43	54
장 소	주차장 외	89	64	5	5	17	29	33
	주차장	50	36	2	6	7	14	21
상 황	충전중	26	18.7	1	3	4	10	8
	주차중	43	30.9	3	5	8	11	16
	운행중	70	50.4	3	3	12	22	30
총 (운행중 제외)	소계	69	-	4	8	12	21	24
	지하	21	30.4	1	2	9	2	7
	지상	48	69.6	3	6	3	19	17

자료: 국가화재정보센터

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기차 화재사고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 및 개정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보험·공제의 가입대상이 되는 재난취약시설(20종)은 각각 개별법령에서 관련 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방법으로 등록하여 관리되는 시설인 데 반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인허가 또는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변경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상황임⁴⁾으로, 개별법령의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훈기의원안, 권향엽의원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 참고로, 환경부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충전시설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기관이 환경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어 모든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주유소, LPG충전소 및 수소충전소 중 주유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LPG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는 각각 개별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에 보험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험가입 의무를 어느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성질, 전기차 화재사고의 발생 빈도, 피해 규모, 재난으로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영진의원안, 권향엽의원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취역시설(20종)은 재난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물로서 개별법에 관련 기관의 인허가, 신고 등으로 등록하여 관리되는 시설을 보험·공제 가입의무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속한 법령개정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2017년 1월 「재난안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일괄하여 지정⁵⁾된 것으로, 전기자동

5)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은 2020. 2. 11. 「농어촌정비법」에서 관리체계 정비 후, 2020. 12. 10. 재난취

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시설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전기
안전관리법」에 인허가, 신고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해당 법률에
보험·공제 가입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나.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개정안은 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 및 제82조).

현행	개정안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80조(벌칙)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u>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제8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u>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u> 2. (생략) ③ (생략)	제8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삭제></u>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재난취약시설의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및 피해가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

협 가입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가입의무 위반을 보다 엄격하게 제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다른 재난안전의무보험⁶⁾이 그 대상에 따라 제재 여부 및 제재 정도를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형벌은 그 성격상 기본적으로 최후적·보충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⁷⁾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중대한 법익 위반(정당한 사유없이 응급조치에 따른 장애물 제거 거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유사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7)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92헌가14결정.

8) p.10 참고자료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시 벌칙 및 과태료 현황]

※ 참고자료

[재난안전의무보험 미가입시 벌칙 및 과태료 현황]

보험명	근거법률	미가입시 벌칙·과태료
선원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선박투자회사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로표지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자율주행자동차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보험(대형)	항공사업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보험(경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류오염배상책임보험	유류오염배상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주배상책임보험	해운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화재보험법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시가스사업법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소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구실안전공제	연구실 안전환경법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정보통신시설사업자 피해보상보험	정보통신망법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증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	연구개발특구법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증특례 손해배상책임보험	지역특구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규정보통신융합 등 기술 서비스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정보통신융합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스마트혁신실증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스마트도시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험명	근거법률	미가입시 벌칙·과태료
신재생에너지설비 배상책임보험	신재생에너지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제특례사업자 손해배상책임보험	산업융합촉진법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궤도운송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궤도운송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계식주차장보수업 배상책임보험	주차장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마시설피해손해보험	말산업육성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청소년활동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승강기 안전관리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옥외광고 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법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배상책임보험	동물보호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회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공제	사회복지사업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유주방사고 배상책임보험	식품위생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안체험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연안사고예방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마리나업자 배상책임보험	마리나항만법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구조사 등 피해보상보험	수상구조법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후조리원 배상책임보험	모자보건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상레저종합보험	수상레저안전법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	우주손해배상법	없음
운전학원종합보험	도로교통법	없음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안전법	없음

보험명	근거법률	미가입시 벌칙·과태료
학원배상책임보험	학원법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없음
생활체육안전보험	생활체육진흥법	없음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없음
유원지배상책임보험	관광진흥법	없음
지정스포츠클럽 피해보상책임보험	스포츠클럽법	없음
기부식품등취식사용 피해손해보험	식품기부법	없음
외국인환자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료해외진출법	없음
의료기기책임보험	의료기기법	없음
청소년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	청소년복지지원법	없음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법	없음
수렵배상책임보험	야생생물법	없음
해양특수경비원 무기사용손해보험	해적피해예방법	없음
낙시터배상책임보험	낙시관리법	없음
낙시어선배상책임보험	낙시관리법	없음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없음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없음

문 의 처

02)6788-5349